

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신청서



접수번호

접수일자 20 . . .

담당자

신청인(이용자)	성명		성별 (V 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남 <input type="checkbox"/> 여
	주소			
	연락처	1.	2.	
		이메일		
탑승일 및 편명		예약번호		

피해유형(V표시)	<input type="checkbox"/> 운송불이행 및 지연	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수하물의 분실 및 파손
	<input type="checkbox"/> 항공권 초과 판매	<input type="checkbox"/> 취소 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
	<input type="checkbox"/> 탑승장, 항공편 등 관련정보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불가	
	<input type="checkbox"/> [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]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	

피해내용 (피해금액 및 산출 근거)	(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)
	<p>*단, 기상상태, 항공기 연결관계,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대상에서 제외</p>

항공법 제 119조의2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88조의2에 의거 위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 _____ (서명)

-----절취선-----

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접수증



항공법 제 119조의2 및 항공법시행규칙 제288조의2에 의거 피치항공에 피해구제신청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접수일	20 . . .	접수번호	
접수자	연락처 이메일	성명	(서명)

<p>1. 법적근거</p>	<p>항공법 제119조의2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288조의2</p>	
<p>2. 피해구제 대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● 위탁수하물의 분실·파손 ● 항공권 초과 판매 ● 취소항공권의 대금환급 지연 ● 탑승장, 항공편 등 관련 미제공으로 인한 탑승 불가 ● 항공사의 사전고지 없이 소멸된 항공마일리지 (해당사항없음) ● [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]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미설치로 인한 항공기의 탑승 장애 <p>*단, 기상상태, 항공기 연결관계, 안전운항을 위한 예기치 못한 정비 또는 공항운영 중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</p>	
<p>3. 피해구제 접수처의 설치 및 운영</p>	<p>피해접수처</p>	<p>인천공항 피치카운터(카운터 운영시간 내) / FAX 02-3789-6759</p>
	<p>처리기한</p>	<p>피해 구제신청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</p>
	<p>처리결과 안내</p>	<p>이메일</p>
<p>4. 피해구제 처리절차도</p>	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1</p> <p>피해구제신청서 작성/제출 이용고객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2</p> <p>피해발생 경위조사 피치항공</p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3</p> <p>처리결과 고객통지 피치항공</p> </div> </div>	

항공사가 신청내용에 대한 구제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거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피해구제신청서는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그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에 이관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.